2014년 11월 1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월 13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소상공인정책국 사업조정팀 정원탁 팀장, 임호순 사무관(042-481-3993)

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

– 홈플러스, 중기청 조정심의 앞두고 세종점 개점강행 –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하여,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(주)에 **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**(10.30)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**홈플러스가 세종점의 개점(11. 13)을 강행**함에 따라 일시정지 권고 **미이행 사실을 공표**하였다.

□ 중소기업청은 세종특별자치시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(이사장 정철성)이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**사업조정을 신청**(9.4)한 이후,

○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'상생법')」의 취지에 따라 **합리적인 상생안 마련**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(4회) 등을 개최하는 등 상생법 취지에 따라 **대화와 협의를 진행**하였고,

○ 중소기업청은 **일시정지 권고조치 이전에**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시 **중소상인의 피해발생**이 우려되고, 중소상인들과 **협의가 진행중**인 점을 감안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**세종점의 개점을 연기**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27일 공식 협조요청하였다.

□ 그러나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**공식 협조요청** 및 **중소상인과 상생협의가 진행**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물품 반입, 직원 채용 등 **사업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진행함에 따라,**

○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10월 30일 홈플러스에 **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**하였다.

□ 중소기업청은 **중소상인 피해 최소화, 세종시 특수성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**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**(11.24)할 것임을 **사전에 통보**하였으나,

○ 홈플러스는 **사업조정심의회 개최예정일을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**에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**개점을 강행**한 것이다.

□ 중소기업청이 **2014년 한해 동안 권고한 총 42건**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 **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**로 **모두 준수**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,

○ 특히,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**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**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**일시정지 권고를 무시**하고 개점을 강행한 사례도 있다.

○ 이후 중소기업청은 **일시정지 '권고'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**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하여 **일시정지 '이행명령'** 및 **과태료 부과** 등의 **행정조치를 강화**하였고, 동 사업조정 진행과정 중 홈플러스에 이에 대해 **충분히 설명**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이다.

□ 향후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가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**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**을 하고, 이를 위반시 **과태료 부과(5천만원)** 등의 **행정조치**를 취할 예정이며,

○ **중소상인 보호**를 위해 **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개최**하여 **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**하고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**정부의 권고안**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할 예정이다.

○ 만일 홈플러스가 **정부의 권고를 미이행**할 경우,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**공표, 이행명령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 임호순 사무관(☎ 042-481-39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